

의안번호	제 48 호
의결연월일	2004. 10.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년월일	2004. 10. 15

법무통계담당주사 심사필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8 호
----------	--------

제출일자 : 2004. 10. 15
제출자 : 사천시장

1. 의결주문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법령개정으로 현실과 괴리된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용 관련 법령명 및 용어 정비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나. 관련 법령의 인용 조항을 정비

- 지방세법 : 제23조의16제1항 ⇒ 제234조의16제1항
- 전쟁기념사업회법 :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2) 입법예고(2004. 9. 1 ~ 9. 23)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사천시 조례 제2004- 호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를 각각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한다.

제11조제3호중 “제23조의16제1항“ 을 ”제234조의16제1항“ 으로 한다.

제21조전단중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를 “동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 한다.</p>	<p>제2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5.18민주화 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p>

현행	개정안
<p>1. ~ 4.(생략) ③ (생략)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생략) 1. ~ 2.(생략)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으로 한다.</p> <p>제21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p>	<p>1. ~ 4(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234조의16제1항----- ----- -----</p> <p>21조(-----) ----- -----동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 ----- ----- ----- -----</p>

관계법령발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第1條 (目的) 이 법은 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 관한 法律에 의한 報償과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枯葉劑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0>

전쟁기념사업회법

第5條 (事業) ①紀念事業會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수행한다.

1. 戰爭紀念館(이하 "紀念館"이라 한다) 및 紀念塔의 建立·운영
2. 紀念館 資料의 蒐集·보존·管理·展示 및 調査·研究
3. 紀念館 資料 및 紀念事業에 관한 弘報·教育 및 이에 관한 각종 刊行物의 製作 및 配布
4. 戰爭에 관한 學藝活動
5. 戰爭史 研究

지방세법

第234條의16 (稅率) ①第234條의15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土地의 綜合土地稅는 다음의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金額을 그 稅額(이하 "綜合合算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0.4.7>